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98호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2호(2007.0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9호(2015.03.12.), 성동구고시 제2015-118호(2015.12.31.), 성동구고시 제2016-36호(2016.04.21.), 성동구고시 제2016-124호(2016.12.2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계획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73,341.0	증) 304.4	73,645.4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3,341.0	증) 304.4	73,645.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341.0	증) 304.4	73,645.4	100.0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미관지 구	중심지 미관지 구	천호대로 (청계천6가~길 동)	278,400	11,600	양측12m	건고350 (72.8.14)	-

■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미관지 구	• 미관지구 폐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반영에 따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이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폐지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3,341.0	증) 304.4	73,645.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8,110.0	증) 272.2	18,382.2	25.0	-
	도로	9,487.0	증) 7.6	9,494.6	12.9	-
	공원	8,623.0	증) 264.6	8,887.6	12.1	어린이공원
획지	소계	55,231.0	증) 32.2	55,263.2	75.0	-
	획지1	53,645.0	증) 32.2	53,677.2	72.9	공동주택
	획지2	1,586.0	-	1,586.0	2.1	차고지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및 순부담 기준 충족을 위한 공원 선형 변경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60 (53.3)	주간선 도로	16,500 (247)	청계1계 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내고시 499 (58.11.03)	철도시설 (지하철5호선) 일부(115.1m ²) 지하에 중복결정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97	용답동 103-9번 지	용답동 106번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 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291	용답동 94-1번지	용답동 158-4번 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 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2	2	19~20	집산 도로	126	용답동 131-14번 지	용답동 118-3번 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 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3	1	12~13	국지 도로	370	용답동 90-10번 지	용답동 131-12번 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 332호 (2007.9.27)	-

※ ()는 대상지와 접한 도로연장 및 일부 확폭 구간임

2)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시철도 (지하철5호선)	답십리 정거장	용답동 99번지 일대	7,185.0	-	7,185.0	건고시 제695호 (1990.10.19)	-

3)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용답동 102-4번지 일대	8,623.0	증) 264.6	8,887.6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8,623.0m² → 8,887.6m² 증) 264.6m²	순부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원 선형 변경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관리사무실	획지1	296.784	-	296.784	-
기정	경로당	"	512.654	-	512.654	-
기정	주민공동시설	"	1,940.387	-	1,940.387	-
기정	주민운동시설	"	968.990	-	968.990	-
기정	어린이놀이터	"	1,698.610	-	1,698.610	-
기정	어린이집 (보육시설)	"	749.936	-	749.936	-
기정	작은도서관	"	563.761	-	563.761	-
기정	조경면적	"	20,888.350	-	20,888.350	-
기정	주민공동시설 총량	"	6,434.338	-	6,434.338	-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m ²)	명칭	면적 (m ²)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용답동 108-1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3,341.0	획지 1	53,645.0	용답동 108-1번지 일대	464	-	-	-	464	-
변경	용답동 108-1번지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3,645.4	획지 1	53,677.2	용답동 108-1번지 일대	464	-	-	-	464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및 공원 선형 변경

2)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 폐 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 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계 획	법적상 한	
기정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 발정비구 역	73,341.0	획지1	53,645.0	용답동 10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2% 이하	283.1% 이하	288.42% 이하	135m이 하 (35층 이하)
			획지2	1,586.0		차고지	관련법규에 의함			
변경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 발정비구 역	73,645.4	획지1	53,677.2	용답동 10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2% 이하	282.9% 이하	288.25% 이하	135m이 하 (35층 이하)
			획지2	1,586.0		차고지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1,670세대(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 포함)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기준		내용			
			계		-		1,670세대 (100.0%)			
			85㎡ 이하	60㎡이하	총 건립 세대수 80%이상	806세대 (48.2%)				
				60㎡초과~85㎡이하		858세대 (51.4%)				
			85㎡초과		총 건립 세대수 20%미만	6세대 (0.4%)				
			●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 287세대							
			구 분		기준		내용			
			계		-		287세대 (100.00%)			
			40㎡이하		40%~50%		115세대 (40.07%)			
			40㎡초과~50㎡이하		40%~50%		115세대 (40.07%)			
			50㎡초과~60㎡이하		10%~20%		57세대 (19.86%)			
			※ 기정 용적률(249.84%)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의 17%이상, 정비계 획 변경으로 증가 세대수의 20%이상 ※ 법적상한으로 증가되는 세대수 제외 ● 소형주택(임대 또는 장기전세주택) : 18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심의완화 사항			■ 201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계획용적률 210% → 230% 이하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법적상한용적률 299.45% 이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5.02.04) 조건			■ 도로확폭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연결되는 도로부분으로 위치를 조정하되, 기부채납 비율 범위내에서 확폭범위를 결정할 것 → 기부채납 비율 약13.3% 범위내에서 확폭범위를 결정하여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연결되는 도로부분의 위치를 조정하 여 반영함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공동주택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용적률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①	획지②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73,341.0㎡	53,645.0㎡	1,586.0㎡	18,110.0㎡	1,025.3㎡	7,257.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 담)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18,110.0㎡ - 1,025.3㎡ - 7,257.1㎡ = 9,827.6㎡ (구역면적 대비 13.4%)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3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30% 적용 ※ 계획(기준)용적률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30% × (1 + 1.3 × 0.1779) = 283.1%이하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110.0 - 1,025.3 - 7,257.1) / (73,341.0 - 18,110.0) = 9,827.6 / 55,231.0 = 0.1779$ - 정비계획 용적률 282.3%이하 적용					
법적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88.42% (정비계획용적률 283.1% + 증가용적률 5.32%)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용적률(5.32%)의 1/2(2.66%)은 소형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①	획지②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73,645.4㎡	53,677.2㎡	1,586.0㎡	18,382.2㎡	1,037.3㎡	7,549.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 담)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18,382.2㎡ - 1,037.3㎡ - 7,549.5㎡ = 9,795.4㎡ (구역면적 대비 13.301%)					
계획(기준)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30%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230% 적용 ※ 계획(기준)용적률 20%상향 조정하여 늘어나는 용적률은 주택규모 60㎡이하로 건설					
개발가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30% × (1 + 1.3 × 0.1772) = 282.995%이하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382.2 - 1,037.3 - 7,549.5) / (73,645.4 - 18,382.2) = 9,795.4 / 55,263.2 = 0.1772$ - 정비계획 용적률 282.9%이하 적용					
법적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288.25% (정비계획용적률 282.9% + 증가용적률 5.35%) ※ 정비계획용적률에서 예정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용적률(5.35%)의 1/2(2.675%)은 소형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					

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1) 임대주택 건설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총동수)	세대수 (전체)	세대규모 (전용)	비고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	획지1	53,645.0	53,677.2	3 (14)	287 (1,670)	• 39.76㎡ : 115세대 • 44.61㎡ : 115세대 • 59.99㎡ : 57세대	27,924.493㎡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287세대	17.5%
40㎡이하	• 기정 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의 17%이상 • 정비계획 변경으로 증가 세대수의 20%이상 ※ 법적상한으로 증가되는 세대수 제외	115세대	7.0%
40㎡초과~50㎡이하		115세대	7.0%
50㎡초과~60㎡이하		57세대	3.5%
산출 근거		• 전체세대수 : 1,634세대 [1,670세대 - 36세대 (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① 정비계획 변경으로 증가 세대수의 20% : 221세대×20%=44.2세대 ∴ 45세대이상 → 249.84%(기준용적률 상향전)-282.85%(금회)= 33.01%×53,677.2㎡(공동주택용지) = 17,718.84㎡/80.36㎡(전용60㎡ 중 최소분양면적)=220.49세대(221세대) ② 기정 용적률(249.84%)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의 17% → 1,413세대(1,634세대-221세대)×17%=240.21세대 ∴ 241세대 이상 ※ 임대주택 계획 세대수 (287세대) > 임대주택 건립기준 (286세대)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 건설 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기정	법적상한용적률		288.42%				
	정비계획용적률		283.10%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88.42% - 283.10% = 5.32%				
		증가된 용적률의 50%	5.32% × 0.5 = 2.66% (53,645㎡ × 2.66%= 1,426.957㎡)				
		의무 연면적	1,426.957㎡ 이상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99㎡	80.368㎡	18세대	1,446.624㎡	-
			→ 80.368㎡ x 18세대 = 1,446.624㎡ > 1,426.957㎡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288.25%				
	정비계획용적률		282.90%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88.25% - 282.90% = 5.35%				
		증가된 용적률의 50%	5.35% × 0.5 = 2.675% (53,677.2㎡ × 2.675% = 1,435.865㎡)				
		의무 연면적	1,435.865㎡ 이상				
	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99㎡	80.368㎡	18세대	1,446.624㎡	-
			→ 80.368㎡ x 18세대 = 1,446.624㎡ > 1,435.865㎡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바이오토프(biotope)공간확장	-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 방지	수재해	• 본 계획구역은 입지상 평탄지에 위치하여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전력이 있는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단지내 저류조설치 및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산사태	• 산사태 우려는 없으나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용답동 108-1번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현황 1,844세대 - 계획 1,670세대 (174세대 감소)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73,341.0	증) 304.4	73,645.4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3,341.0	증) 304.4	73,645.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73,341.0	증) 304.4	73,645.4	100.0	-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천호대로 (청계천6가~길동)	278,400	11,600	양측12 m	건고350 (72.8.14)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미관 지구	• 미관지구 폐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반영에 따른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명칭이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의 실효성 제고에 따른 폐지

다. 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60 (53.3)	주간선 도로	16,500 (247)	청계1계교	상일동 시계	일반 도로	-	내고시 499 (58.11.03)	철도시설 (지하철5호선) 일부(115.1㎡) 지하에중복결정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97	용답동 103-9번지	용답동 106번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2	1	15~18	집산 도로	291	용답동 94-1번지	용답동 158-4번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2	2	19~20	집산 도로	126	용답동 131-14번 지	용답동 118-3번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기정	중로	3	1	12~13	국지 도로	370	용답동 90-10번지	용답동 131-12번 지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 ()는 대상지와 접한 도로연장 및 일부 확폭 구간임

2)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도시철도 (지하철5호선)	답십리 정거장	용답동 99번지 일대	7,185.0	-	7,185.0	건고시 제695호 (1990.10.19)	-

3)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용답동 102-4번지일대	8,623.0	증) 264.6	8,887.6	서고시 제2007-332호 (2007.9.27)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8,623.0m² → 8,887.6m² 증) 264.6m²	순부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원 선형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가구	면적(m²)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변경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73,341.0	73,645.4	획지1	용답동 108-1번지 일대	53,645.0	53,677.2	공동주택
				획지2	용답동 90-7번지 일대	1,586.0		차고지

※ 변경사유 : 지적(분할)측량 면적 반영 및 공원 선형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차고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가)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22% 이하	-

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획지1	230% 이하	230% 이하	283.1% 이하	288.42% 이하	-
변경	획지1	230% 이하	230% 이하	282.9% 이하	288.25% 이하	-
기정	획지2	관련법규에 의함				-

다)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m 이하 (35층 이하)	-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관련법규에 의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가.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라. 정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변경)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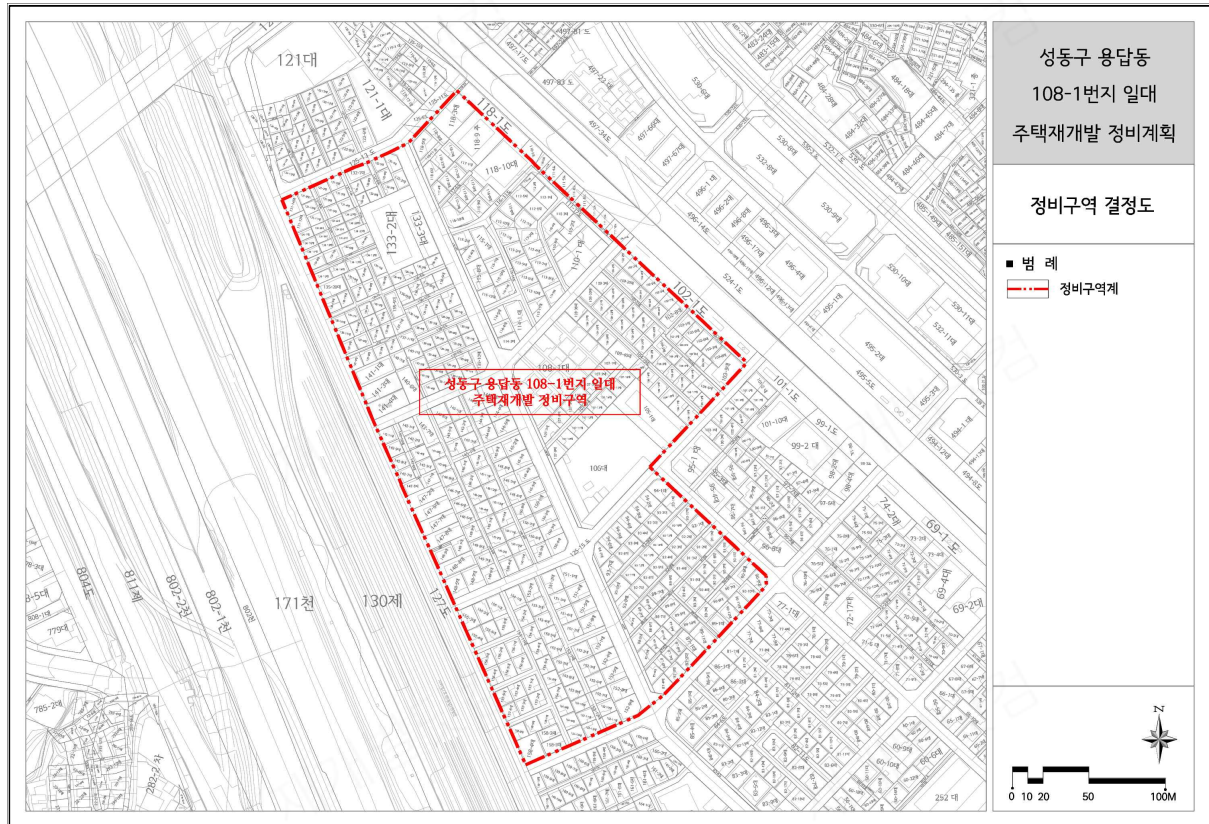
Ⅳ. 관련서류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6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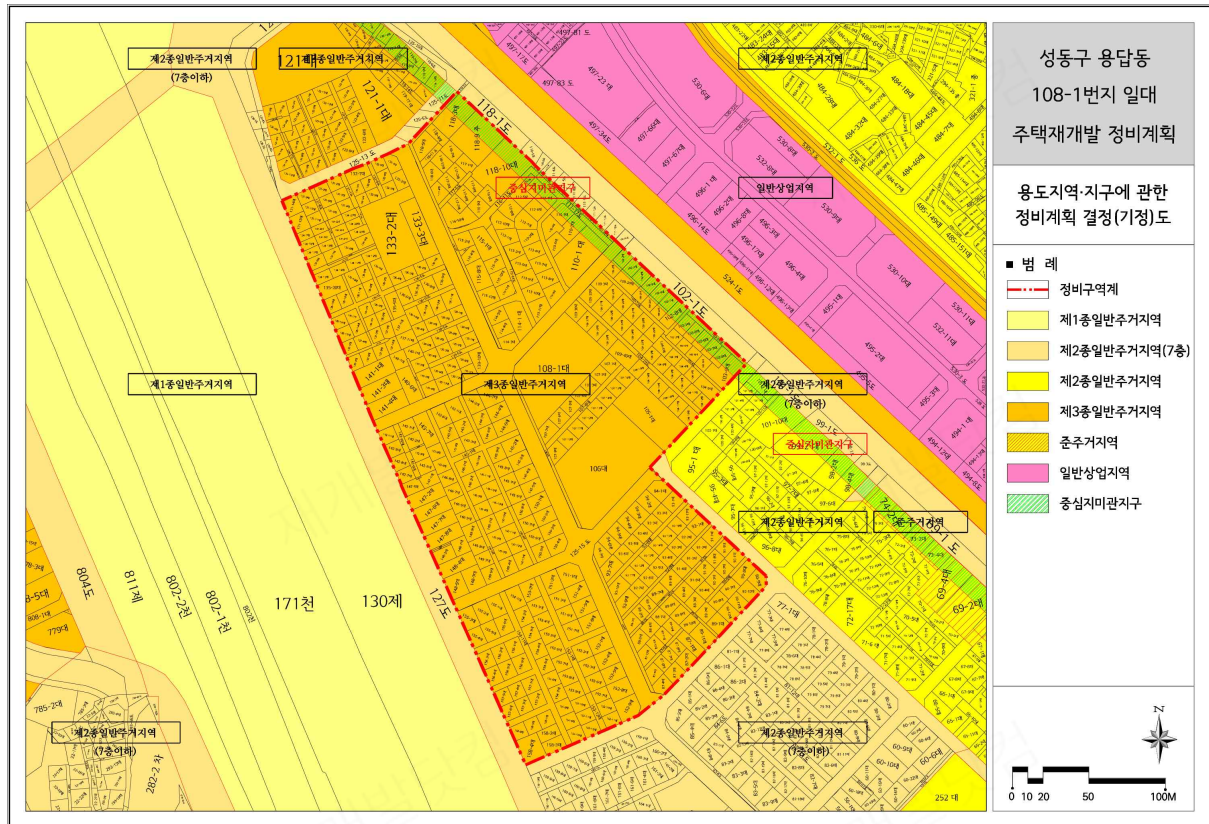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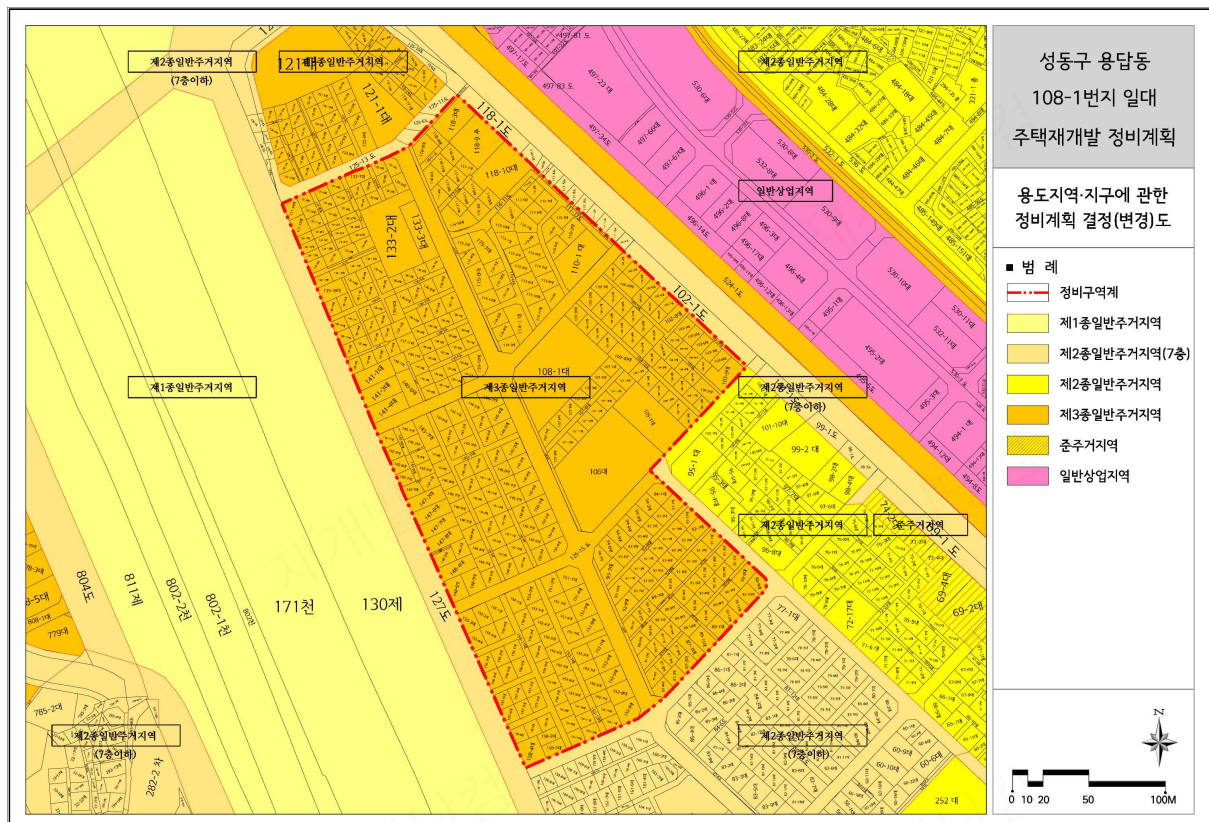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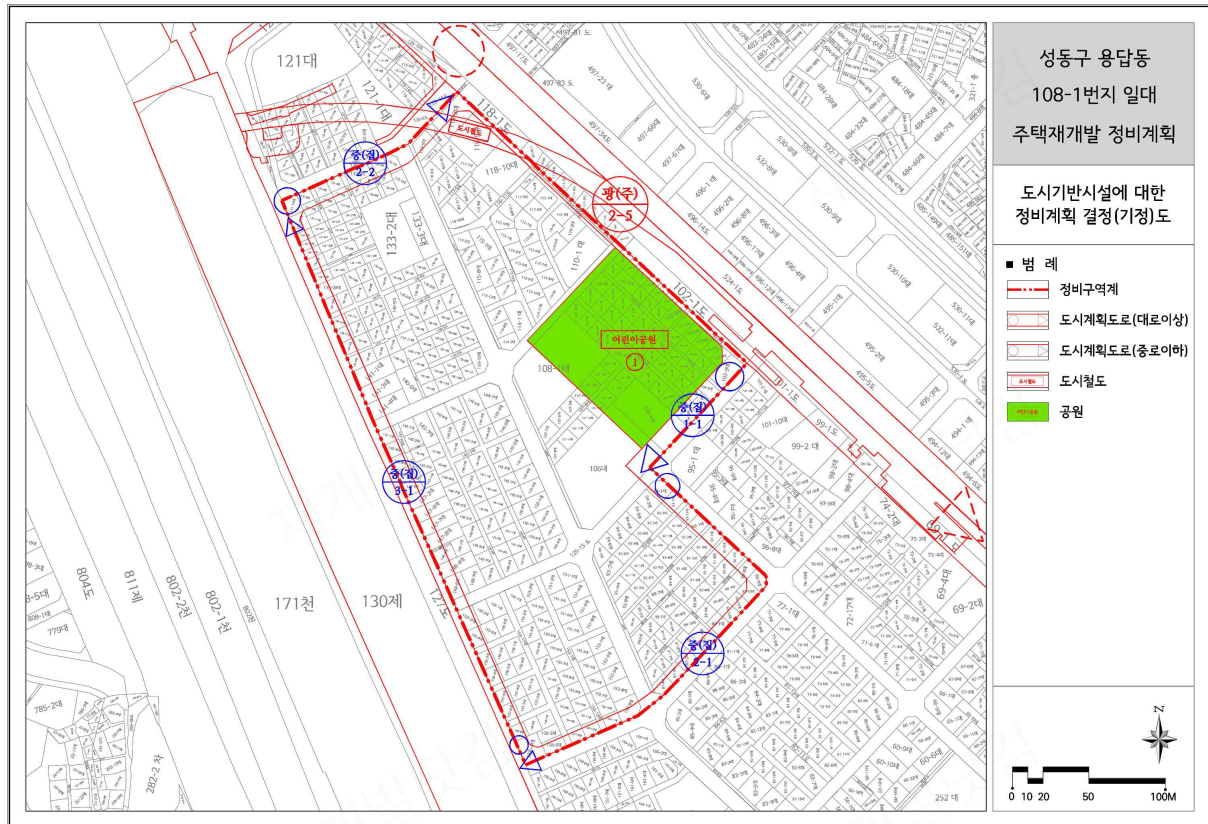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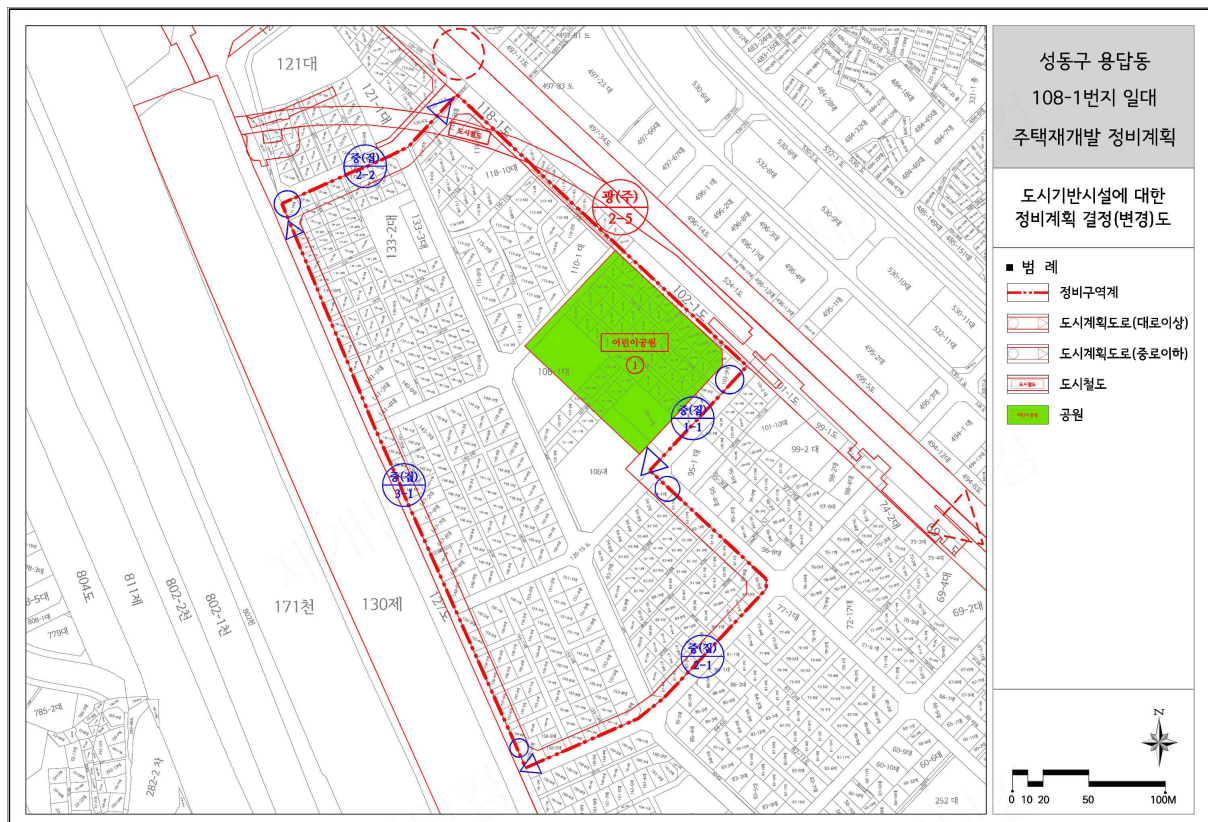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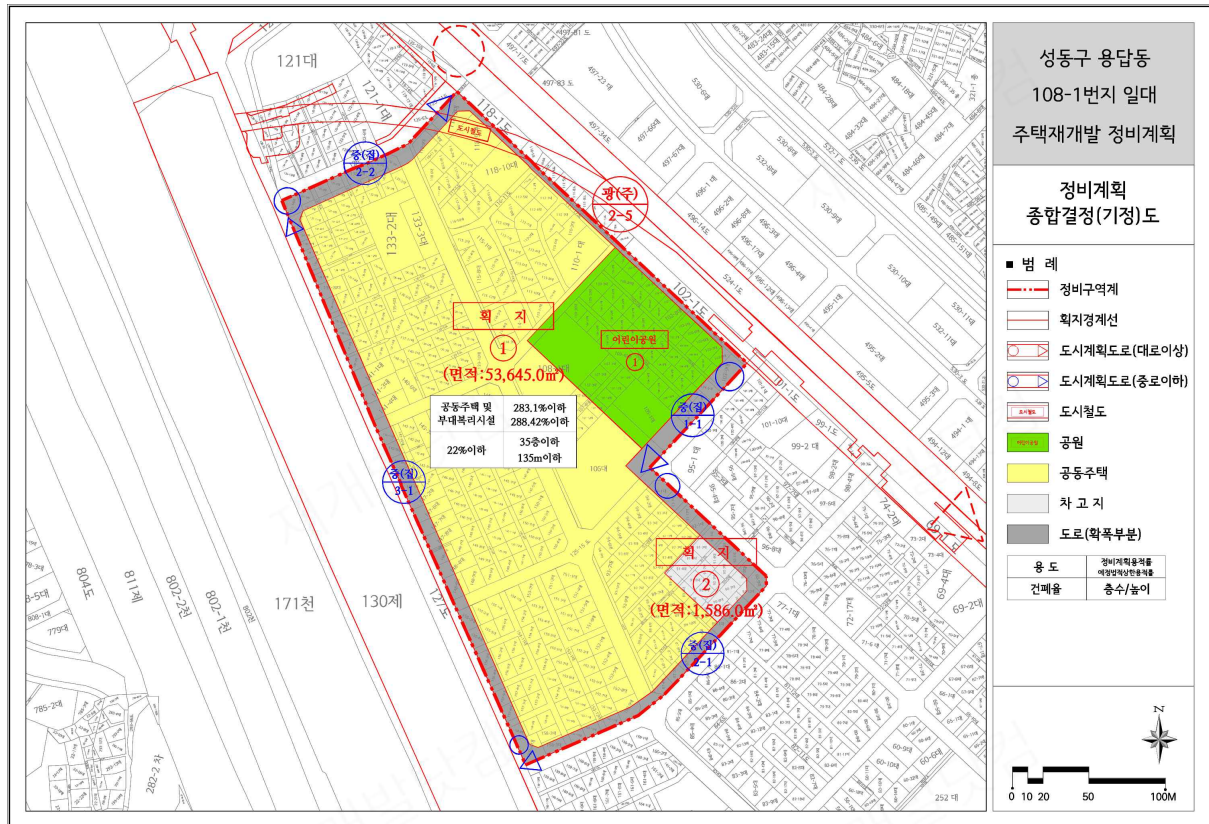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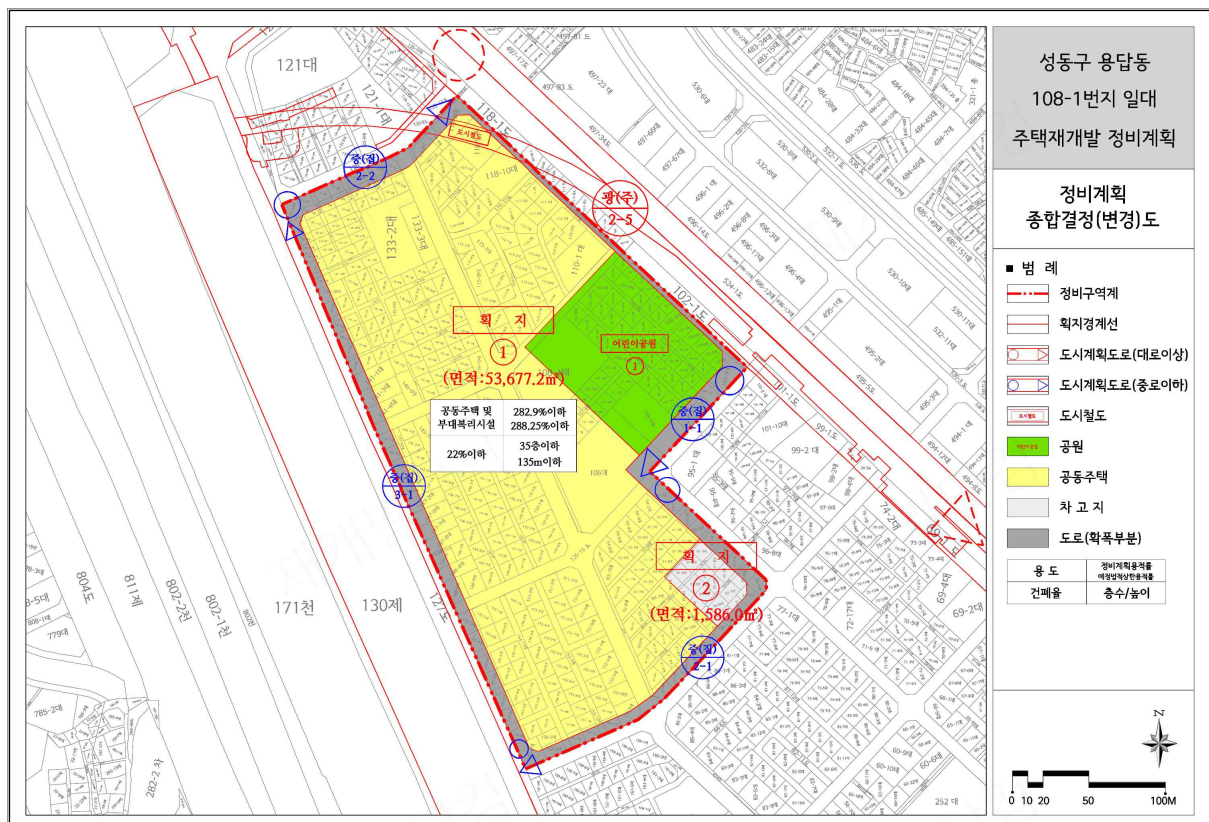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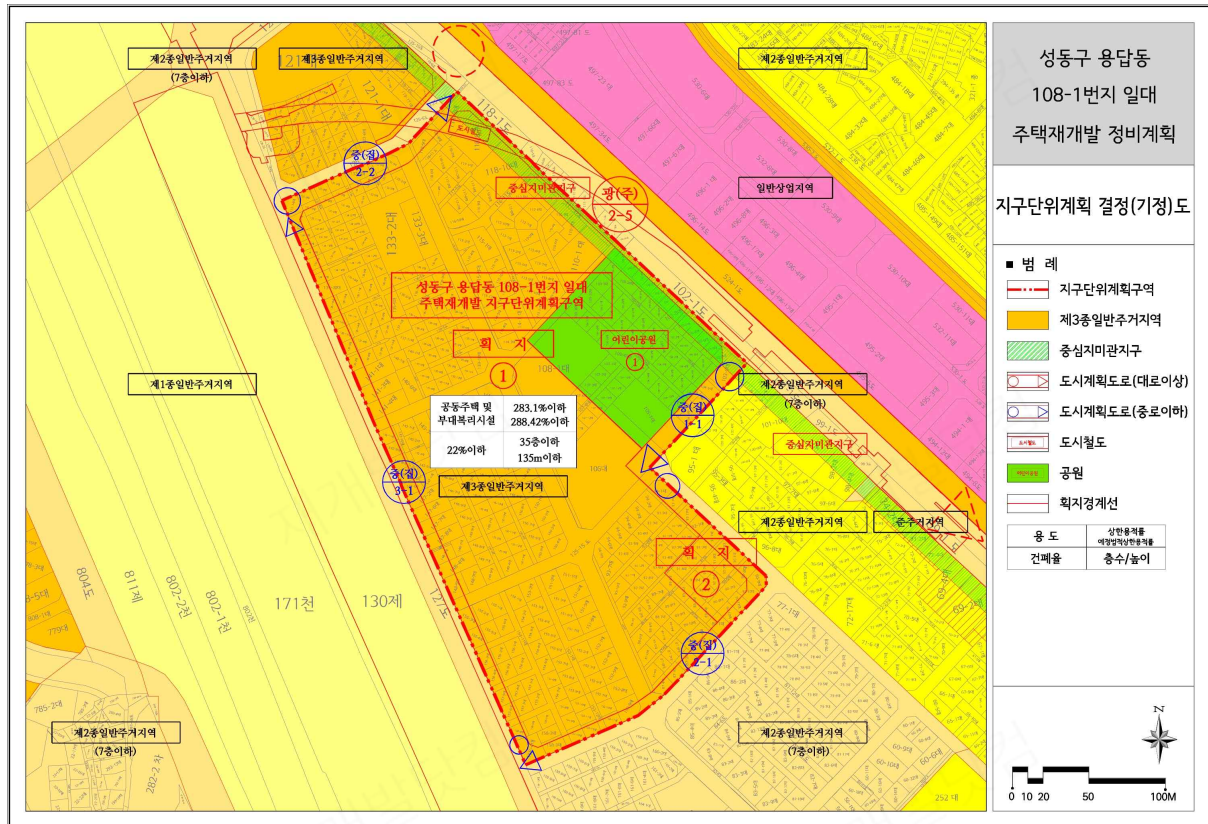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종합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